

지역사회 협력활동 운영규정

제정 2025.10.27., 2026.03.20.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해전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가 보유하고 있는 인·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사회 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지역사회”란 대학이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말한다. 단, 협력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2. “지역사회 협력 활동”이란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상생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조직)

- ① 지역사회 협력 활동(이하 “협력 활동”이라 한다)은 글로벌 대외교류처장이 관장하고, 협력 활동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학칙에 따른 처·단·센터와 부속기관에서 구분하여 운영하며, 담당인력은 부서별 사무 분장에 따른다.<개정 2026.03.20.>
- ② 교육부 등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협력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별도의 센터를 둘 수 있고, 센터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4조(예산회계)

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학 회계 또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활동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타 회계를 활용할 수 있다.

제5조(협력 활동의 범위)

- ① 협력 활동의 범위는 각호와 같다.
 1.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학 캠퍼스 및 시설 개방
 2.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유·협업 교육 프로그램
 3.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현안 해결
 4. 지역사회 주관 축제 등 행사의 공동 운영 및 참가
 5.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사업
 6.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추진되는 협력 활동
 7. 기타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등
- ② 단, 제1항의 각호가 산학협력 활동, 사회봉사 활동, 평생 교육활동, 재학생 취·창업 활동

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었으면 협력 활동에서 제외한다.

제6조(지역사회협력위원회)

- ①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협력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글로벌 대외교류처장으로 하며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총무처장,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<개정 2026.03.20.>
- ③ 외부 위원은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 1. 광역자치단체 또는 대학 소재 기초자치단체의 임직원
 2. 지역사회 관계기관의 임직원
 3. 대학의 교원 또는 직원 등 외부 전문가
- ④ 당연직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며, 그 밖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단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한다.
 1. 협력 활동의 연간 계획 심의·의결
 2. 협력 활동의 연간 추진 결과 및 성과 심의·의결
 3. 협력 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심의·의결
 4. 그밖에 협력 활동 추진에 필요한 사항
- ⑥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환류 체계)

글로벌 대외교류처장은 위원회를 통해 협력 활동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이후의 협력 활동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.<개정 2026.03.20.>

제8조(준용 규정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의 규정 및 재정지원사업 지침 등을 따른다.

부 칙(2025.10.27.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6.03.20.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